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
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가 부과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부 기업에 대해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겸직금지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의무 대상 완화(제36조의7제5항)

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 중 ‘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자’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의무를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4. ~ 9. 13.) 진행

3) 행정규제 : 비규제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7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7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) ⑤ 법 제45조의3 제3항에서 “자산총액,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”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중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의7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) ① ~ ④ (생 략)	제36조의7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“자산 총액,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”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. <후단 신설>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다만, 제1항제2호 가목에 해 당하는 자 중 주식의 소유를 통하 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 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로서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제외 한다.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467